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매뉴얼





KOOKMIN UNIVERSITY Industrial 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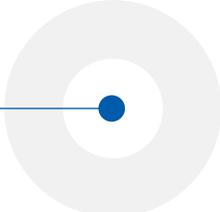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관리매뉴얼





CONTENTS



제1장 ▪ 연구비 중앙관리 · 6

1. 산학협력단 소개 · 6
2. 조직구성 및 업무 · 6
3. 연구비 중앙관리의 목적 · 8
4.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 10
5. 연구개발비 관리기준 · 10
6. 외부연구사업 진행 흐름도 · 11
7. 연구개발비 집행원칙 · 12

제2장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 · 13

1. 인건비 · 13
2. 학생인건비 · 22
3. 연구시설·장비비 · 25
4. 연구재료비 · 31
5. 연구활동비 · 35
6. 연구수당 · 62
7. 보안수당 · 65
8. 위탁연구개발비 · 66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 67
10. 간접비 · 69

제3장 ▪ 연구계획의 변경 · 77

1. 중요한 협약의 변경 · 77
2. 경미한 협약의 변경 · 80
3. 협약변경 절차 · 83
4. 국외수혜정보 · 84

제4장 ▪ 연구비 정산 및 실적 보고 · 85

1. 연구개발비 정산 · 85
2. 사용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 87

제5장 ▪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 91

1. 특허 출원 · 91
2. 기술이전과 발명자 보상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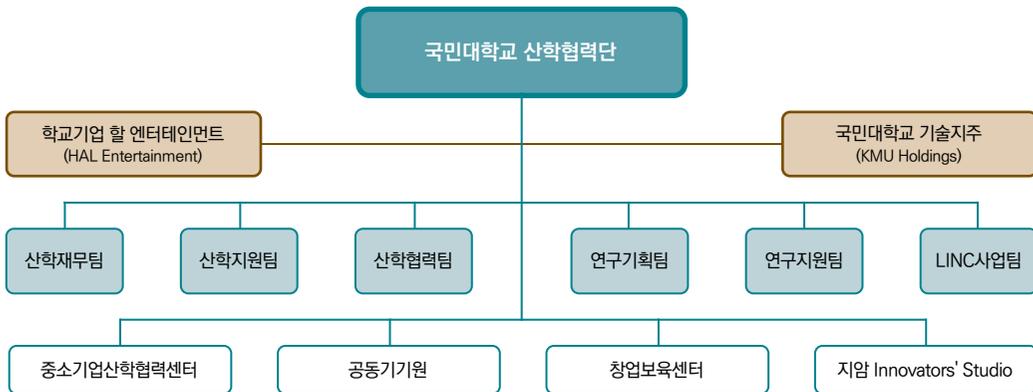
제1장 연구비 중앙관리

1. 산학협력단 소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5월 3일자로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유기적 연계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비 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임

2. 조직구성 및 업무 현황

1) 조직도



2) 업무현황

팀	업무
산학재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 • 산학협력단 수입·지출 및 세무 등 회계업무 • 산학협력단 간접비 산출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
산학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4대 보험 • 산학협력단 물품검수 및 관리 •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 관수
산학협력팀 (기술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기획 및 정책 수립 • 산학연 협약에 관한 체결 및 관리 •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및 센터 설립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보유기술 사업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교원 창업 및 겸직허가 • 창업보육센터, 지암 Innovators' Studio 운영 • 자회사 설립 및 편입 • 자회사 성장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운영관리
연구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사업 등 외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 •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 • 외부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 외부 연구비 통계 관리 • 외부 연구비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연구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우수연구센터사업, 안전관리비,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연구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연구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 • 국가 R&D사업, 산학연 협약사업 등 외부 연구과제 협약 및 계약 체결 •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정산 • 연구인력 임용 및 관리 • 외부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 •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관리 • 연구윤리, 보안, 노트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 공간관리
LINC 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추진 • 기업협업센터(ICC) 및 사업단 소속 각 센터 운영 • 사업단 인력 관리 및 행정지원 • 학생, 기업, 지역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업단 산하 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현장기술 애로지도, 상담사업 • 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 중소기업 기술정보, 기술교육 지원 사업 •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관련된 사업
공동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반활용사업 관리 • 공동실험기기센터 설비분석·관리, 고객관리 및 안전관리 • 소프트소자팩 경영지원(FAB 교육 및 공동설비 안전관리/공동활용 운영 수익 관리/장비운영 지원) • 공동실험기기센터 TEM 분석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암 Innovators' Studio 등 부설센터	

3. 연구비 중앙관리의 목적

가. 정의 : 연구비 중앙관리는 연구정보의 획득, 지원신청, 연구계약체결, 연구과제체결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 업무를 일정한 전담기구에서 총괄 관리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충실도를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연구주체별 책임과 역할

<p>산학협력단 및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 •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지원 • 소속 연구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p>연구자 및 연구책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수행 •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수행 •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투명하게 연구비를 사용함.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 결과·성과 등에 관한 보고를 진행 •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배우자의 4촌 이내 포함))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을 진행.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함. 연구책임자는 본교 재직 또는 재학 중이며, 교원인사규정 제64조에 따른 연령(이하 "정년"이라한다.) 미만인 자로 함 •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투명하게 연구비를 사용함. • 연구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및 연구 결과·성과 등에 관한 보고를 진행한다. • 참여연구원의 관리·감독 및 교육을 진행. •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함. • 별지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고(https://research.kookmin.ac.kr) <p>※ 예외적용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에 도달한 연구책임자에게 진행 중인 과제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령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이후 1년 동안 연구책임자로서 과제 참여가 가능함. 그 이후에는 공동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과제에 참여가능. •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 기간이 연구책임자가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이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향후 연구책임자 변경에 관한 약속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4. 연구비 중앙관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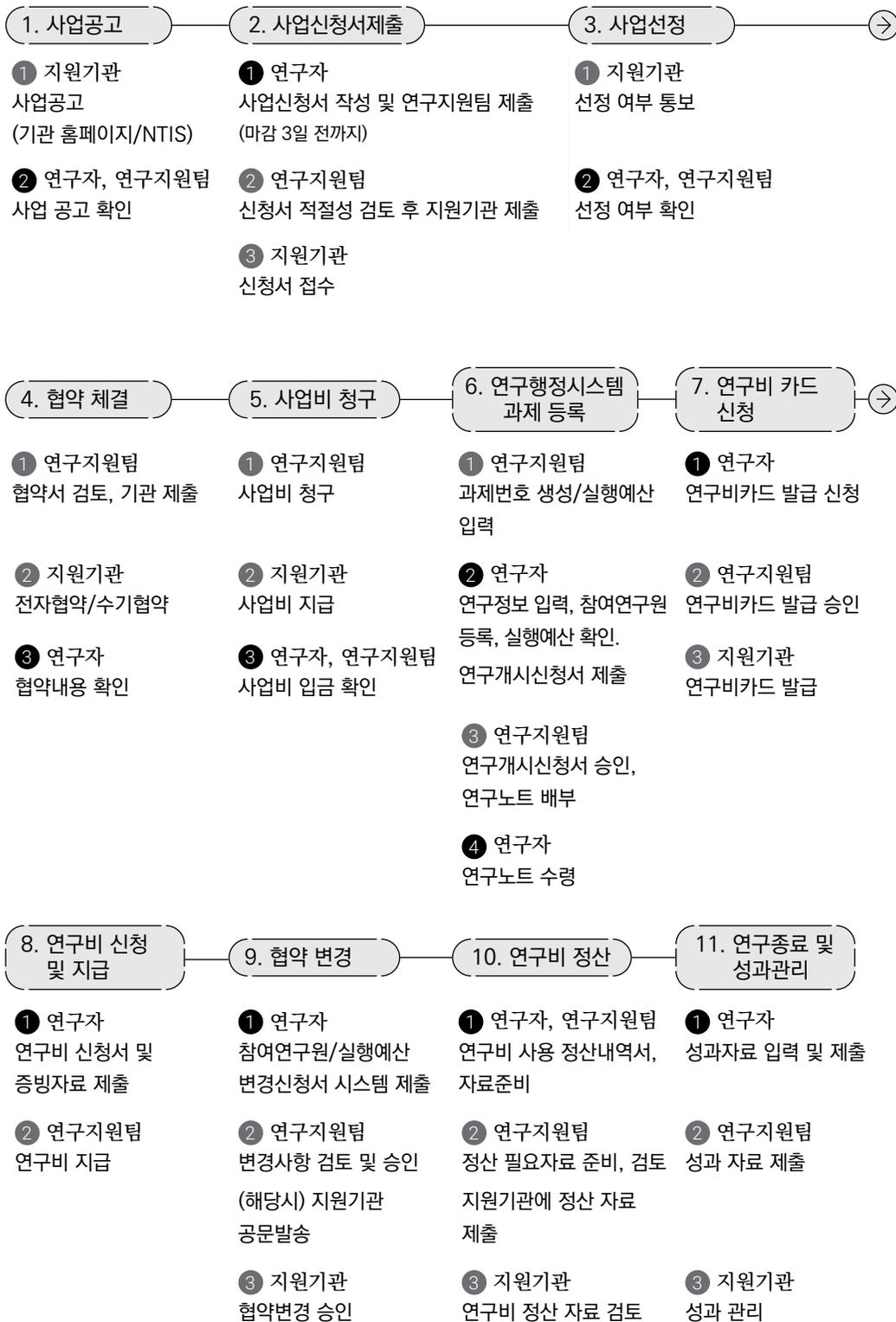
가. 본교(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나. 연구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민간기관 등 연구 지원기관으로 부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연구 용역비 (예체능계 창작 및 공연비 등 포함)를 통칭함

5. 연구개발비 관리기준

연구비 재원	사업구분	관리기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학기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관리
	연구용역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이를 근거로 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관리
국내·외 산업체 및 민간기관 등	일반산업체사업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을 우선하며, 없을 경우 본교 “외부연구비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
기부금, 연구용역비	기타사업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을 우선하며, 없을 경우 본교 “외부연구비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라 관리

6. 외부연구사업 진행 흐름도

* 과제 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연구개발비 집행원칙

* 모든 집행 정산기준은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구분	내용	비고
규정준수	지원기관의 규정(지침) 및 본교 규정류, 관련 세법 등을 준수하여 집행	
연구비계상의 정확성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필요한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2. 연구과제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3. 개인성 및 간접성 경비 불인정 	
증빙자료의 객관성	<p>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지출결의문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하며, 증빙자료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연차 및 단계과제는 최종 연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비 카드 영수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기관 연구비카드,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산학협력단 개인형 법인카드 ②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서 첨부(해당시) 2.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받는자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사업자번호 209-82-08395) ②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거래내역서 첨부(해당시) 3. 간이영수증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집행(3만원 이하) 	
집행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서에 명기된 연구기간 내에 집행 · 신청 ·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지원기관의 별도 제한사항이 없고 차년도 과제로 이월, 지원기관으로 잔액 반납을 진행하지 않는 과제에 한하여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집행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등으로 잔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10만원 이하 미사용 잔액은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흡수함 나.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사용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 승인 받은 건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1년씩 최대 3회까지(총 3년 이내)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비를 사용, 집행가능 단 과제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과제의 경우, 최종 잔금 입금일을 종료일로 함 (22.8.1 시행) <p>*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2조 1항 1호는 시행일 이전 진행 과제가 있을 경우 최종종료시까지 수행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행일 이전 종료된 과제에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시행일을 연구기간 종료일로 함 	

※ 전자증빙 도입으로 온라인 접수 : 국민대학교 연구행정시스템(<https://rnd.kookmin.ac.kr/>)

서류 제출이 필수인 전자증빙 예외사업은 기존대로 서류를 제출함

제2장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

1. 인건비

가. 정의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내부인건비

- 1)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2)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외부인건비

- 1)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 ② 타 대학 소속 학생 연구원
 - ③ 과제 참여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2)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무소속 연구원 등은 본교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과제에 참여하여야 함.
- 3)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인건비 산정기준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 기준액 × 계상률(%)'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직급별 인건비 계상 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나. 계상기준

1)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본교 전임교원)

직급 구분		월 기준액 (단위:천원)	적용기간 (과제시작일 기준)
2023년	교수	10,000	2023.01.01. ~ 2024.12.31.
	부교수	8,000	
2024년	조교수	6,600	

계상 방법 직급별 월 기준액 x 계상률(%) x 참여 개월수

2) 내부인건비

① 전임연구인력(비전임교원) 인건비 계상기준 및 제출서류

(단위: 천원)

임용구분 : 전임연구인력		임용권자 : 총장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 기준	월 기준 인건비 (계상률 100%기준)	(예산편성용) 4대보험기관부담금, 월퇴직적립금포함	
			1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박사급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4,500	5,321	63,852
박사급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5,500	6,504	78,048
박사급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 	6,500	7,686	92,232
박사급 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한 본교 전임교원 교수급 경력 인정자 	8,000	9,459	113,508

* 월 급여 계상상한액 : 기관부담금, 퇴직금 미포함

-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 월 급여 + 월 4대보험 기관부담금 + 월 퇴직적립금
 - 월 급여 = 기준단가(월 급여상한액) × 계상률(%)
 -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예상액) = 월 급여 × 9.9%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해야 함
 - 월 퇴직적립금 = 월 급여 ÷ 12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 퇴직금 = 월 퇴직적립금 × 임용기간(월)
- 경력환산 기준
 - 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하며, 부족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
 -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소지자, 특수한 경력자는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월 기준액을 계상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기준액을 상향 계상 가능함

임용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임용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 학위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 급여수령계좌사본, IRP계좌사본
- 증명사진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 기타 요청서류
- ※ 별지서식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면직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사직서
- 퇴직보안서약서 (15일 전까지 제출)

②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 및 제출서류

(단위: 천원)

임용구분 : 연구원		임용권자 : 산학협력단장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 기준	월 기준 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예산편성용) 4대보험기관부담금, 월퇴직적립금포함	
			1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전문학사 취득자	1,800	2,129	25,548
전임 연구원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경력 인정자	2,500	2,957	35,4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3,500	4,139	49,668
선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4,500	5,321	63,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5,500	6,504	78,048

(단위: 천원)

임용구분 : 행정인력		임용권자 : 산학협력단장		
직급 구분	동등 경력 인정 기준	월 기준 인건비 (계상률 100% 기준)	(예산편성용) 4대보험기관부담금, 월퇴직적립금포함	
			1개월 기준	12개월 기준
1호	전문학사 취득자	1,800	2,129	25,548
2호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1,900	2,248	26,976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경력 인정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2,000	2,365	28,380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2,100	2,483	29,796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2,300	2,720	32,640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2,500	2,957	35,484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2,700	3,193	38,316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3,000	3,547	42,564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 	3,300	3,902	46,824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자 후 2년 이상의 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의 경력자 	3,600	4,257	51,084

- 월 기준인건비는 인건비 계상과 계상률 관리의 상한액임
 - 월 급여 = 기준단가(월 급여상한액) × 계상률(%)
 - 월 급여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 미포함)는 아래 기준 이상 책정하여야 함
 - ※ 2024년도: 월 78만원 이상
 -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예상액) = 월 급여 × 9.9%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해야 함
 - 월 퇴직적립금 = 월 급여 ÷ 12 [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
 - ※ 퇴직금 = 월 퇴직적립금 × 임용기간(월)
- 경력환산 기준
 - 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하며, 부족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
 -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소지자, 특수한 경력자는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월 기준액을 계상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기준액을 상향 계상 가능함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임용신청서 (연구행정시스템 입력)
- 임용지원서 (별지서식1)
- 학위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연구과제별 인건비편성표 (별지서식2)
- 개인정보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 (별표5)
- 급여수령계좌사본, IRP 계좌사본

면직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사직서
- 퇴직보안서약서 (15일 전까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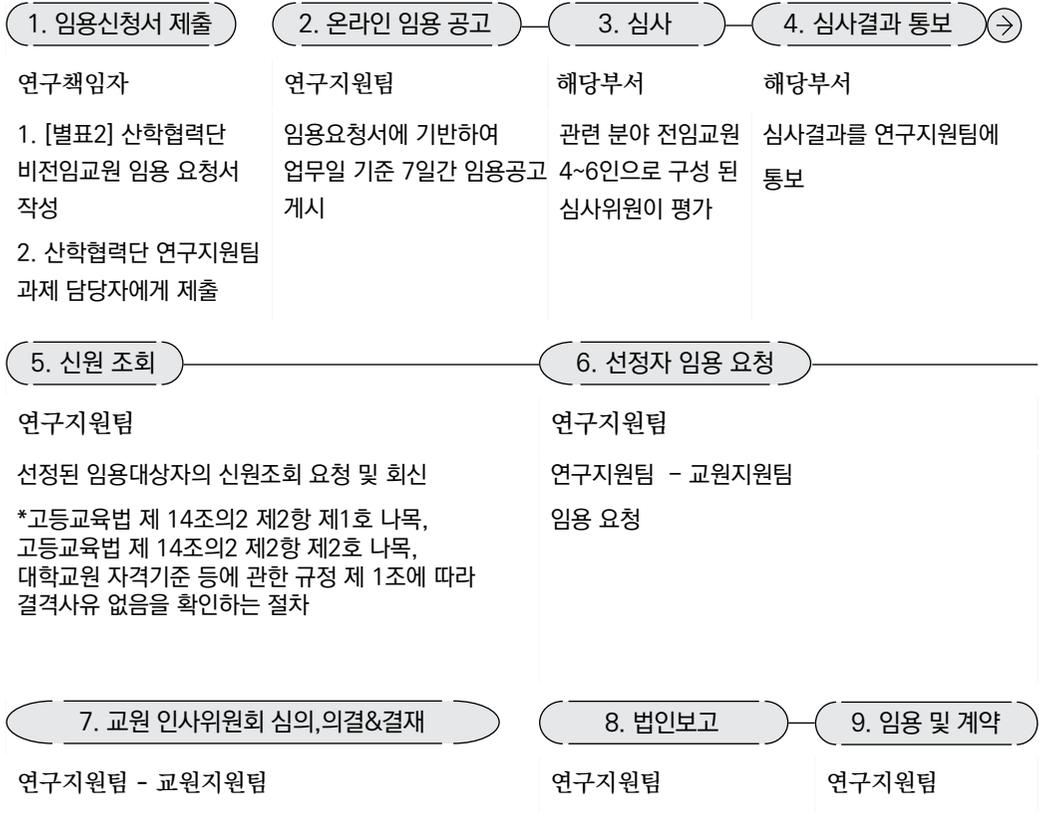
타 대학 학생연구원 증빙서류

- 외부참여기관장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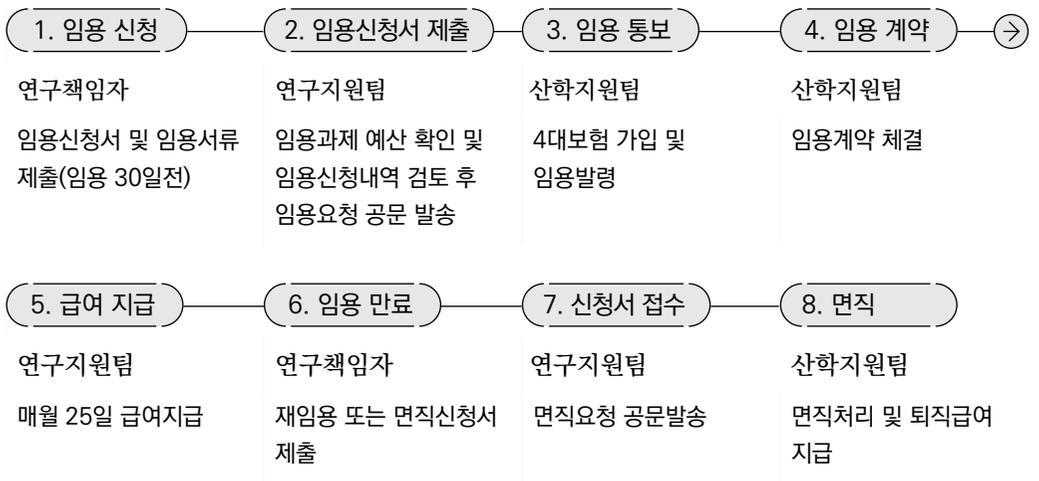
다. 집행원칙

구분	내용	비고
지급대상	산학협력단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연구원 ※ 본교 소속 전임교원이 당해 연구개발과제 직접 참여하는 경우 본교 계상 기준에 따라 당해 과제 계상률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산업체, 연구용역 등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원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	
지급방식	1. 개별지급: 참여연구원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2. 자동지급: 참여연구원 등록 시 매월 청구 없이 25일 자동지급 3. 과세지급: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① 고용계약 체결 연구원: 근로소득 ② 타 대학 학생연구원: 기타소득 ③ 외국인: 세법에 따라 세율 적용	
계상률 관리	1. 고용계약 체결 연구원: 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계상률을 산정하며, 계상률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산 계상률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 관리함 2. 타 기관 소속 연구원, 타 대학 학생연구원: 소속 기관(대학)의 '기관장 확인서'를 통해 계상률 관리	
참여 연구원 변경	1. 참여연구원의 변경사항(인건비, 참여기간, 참여제외 등)이 있는 경우 인건비 지급은 매달 10일까지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제출 2. 지원기관 승인 및 통보(보고): 지원기관 사전승인 또는 변경사항 통보 후 변경 가능	
고용계약 체결	1. 졸업자 등 소속이 없는 자는 본교 산학협력단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및 인건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임용 1개월전 관련 서류를 제출 ※ 2024년 최저 월 급여 기준 : 월 78만원 이상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요청 - (전임연구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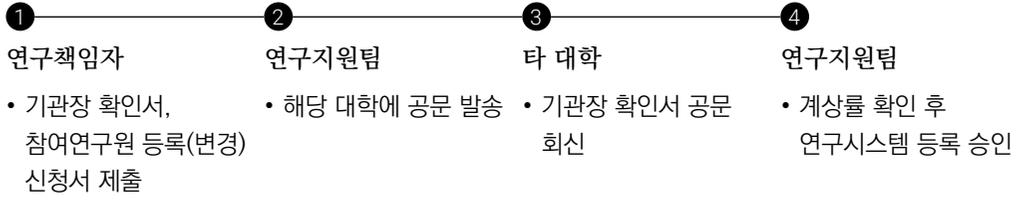
라.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 (비전임교원) 임용절차 (공개채용시)



마.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절차



바. 타 기관 소속 연구원 및 타 대학 학생연구원에 대한 연구원 등록절차



2. 학생인건비

가. 정의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본교 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된 경우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2) 본교 재학생 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학생인건비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3)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

나. 계상기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지급률에 따라 계상

• 학생인건비 지급률

$$\text{학생인건비 지급률} = \frac{\text{해당 월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text{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금액

구분	2021.09.01. 이후	2023.01.01. 이후
학사과정생	월 1,000,000원	월 1,300,000원
석사과정생	월 2,000,000원	월 2,200,000원
박사과정생	월 2,800,000원	월 3,000,000원

다. 집행원칙

구분	내용
지급대상	1. 본교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2. 수료생인 경우 '연구생등록' 후 지급가능
지급방식	1. 개별지급 : 학생연구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 1인 1계좌로 지정 2. 자동지급 : 참여연구원 등록 시 매월 청구 없이 25일 자동지급 3. 과세지급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기타소득) 후 지급
지급률 관리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산 지급률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자동 관리함
학생연구자 변경	과제 협약 체결, 변경, 중단, 해약,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 변경 가능 (학기, 학년 초 협약 체결 후 변경은 최소한으로 해야함)

- 1)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월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총인건비 계상률을 산정시 미포함
 - ①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② 「고등교육법」제14조의 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③ 소속 학생연구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2)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통합관리기관장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
 - ① 연구참여확약서의 학생연구자 담당업무(역할)는 수행내용,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없는 업무는 기재할 수 없음
- 3)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해당연구자의 소속기관·단체에 통보
- 4) 학생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전년도 잔액, 발생이자 포함) 대비 50% 이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함 (학생인건비 집행현황은 통합 Ezbaro와 연동되어 모니터링 됨)
- 5) 통합관리기관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이상이 되도록 관리

라.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 소급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래 사유에 한하여 소급 지급 허용

- 1) 협약 지연
- 2)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학생인건비 계정 잔액이 부족할 경우)
- 3)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지연
- 4) 기타 (*소급지급 사유와 관련된 증빙 제출필수)

마. 부당지급 사례

- 1) 연구참여확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한 금액
- 2)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월별 지급률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
- 3) 연구참여확약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91조제3항 각호 외 사유로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4)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 5)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요건

- 1)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 2회 발생
*1회 발생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2)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3) 지정 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 4)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 5) 지정 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별권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매뉴얼' 참고

3. 연구시설·장비비

가. 정의

구분	특이사항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연구시설·장비운영·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 ※ 공통사용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구입가 :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생산한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적용하여야 함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구매시기	(원칙)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긴급상황)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장비구축과제) 과제종료전까지 ※ 외자 물품 또는 공개 입찰을 통한 중앙구매는 2~5개월 소요되므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 긴급상황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방법	1. 본교 구매규정에 따라 중앙구매하며 대응자금도 동일하게 진행 ※ 2천만원 초과 물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2~3개월 소요)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검수기준)
납품 및 검수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검수 장소에 업체 담당자가 물품 납품 후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 지정한 대리인) 입회하여 검수
대금결제	1. 검수담당자: 검수완료 후 연구비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2. 연구관리자: 검수확인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수령 후 대금 지급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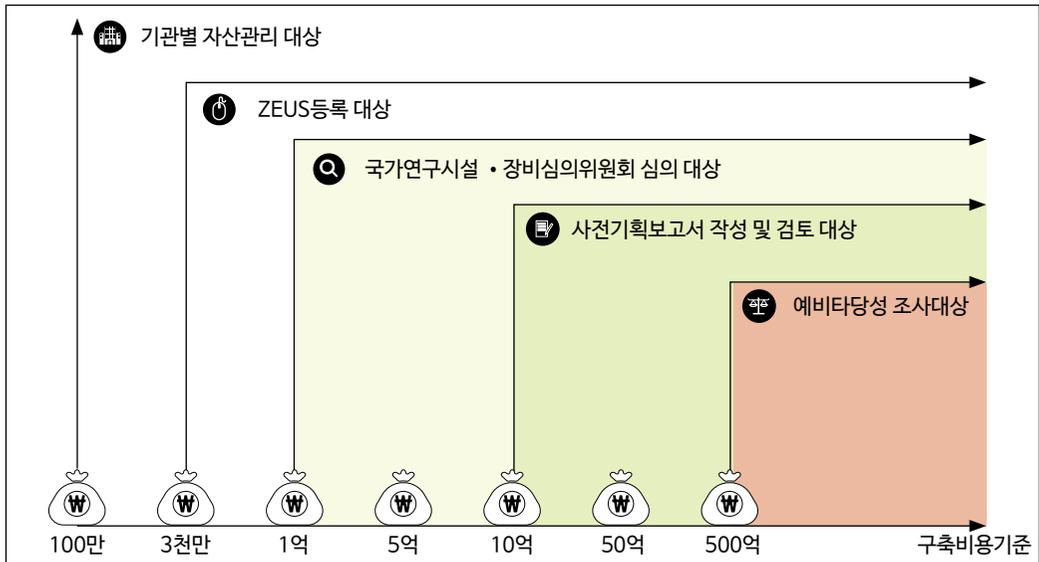
지원기관
승인사항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①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②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 ③ 원래 계획과 다르게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계상
3. 금액별 승인기관

금액	승인기관	비고
3천만원 ~ 1억원미만	연구장비심의위원회(본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 지원기관 규정상임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 연구시설장비 관리대상 기준

참고 연구시설장비 관리대상 기준



-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
-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 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다.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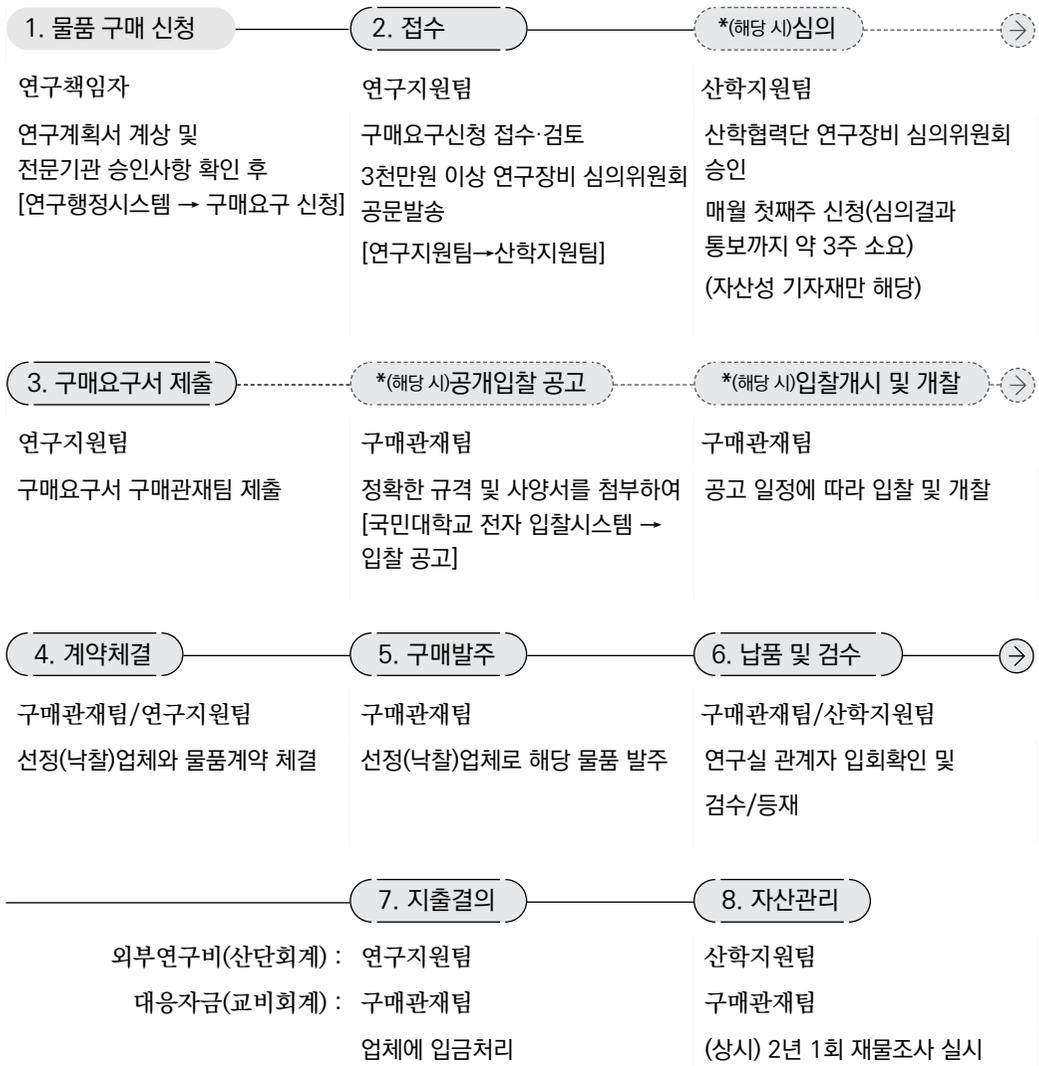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영수증 및 증빙서류	비고 연구관리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구매요구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 계상 및 변경 승인 공문 (해당 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검수검사조서

※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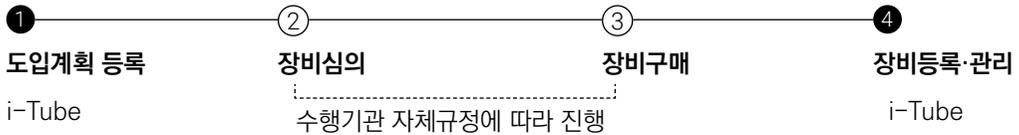
라. 중앙구매 절차



마. 산업통상자원부 장비 구분에 따른 장비도입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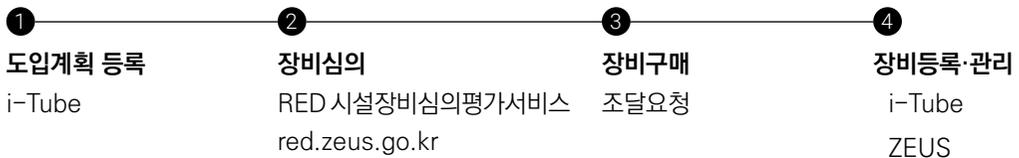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근거하여 검수완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i-Tube 등록해야 함.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등재,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Tube 등록해야 함)

1)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장비를 도입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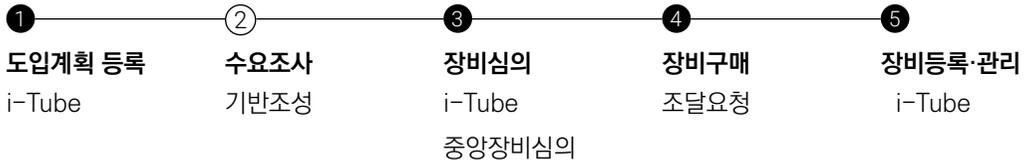


2)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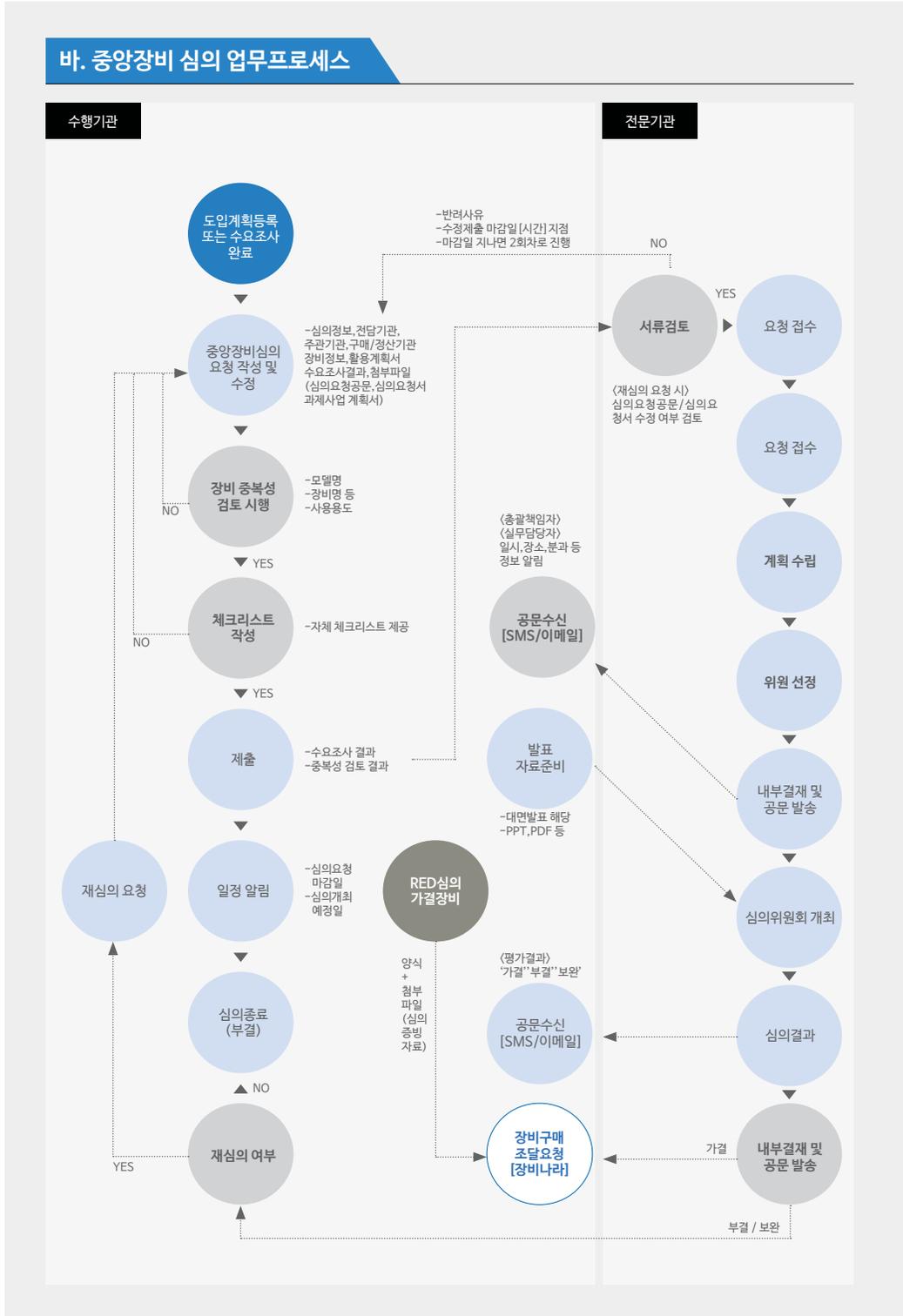
① 과기정통부 심의 대상(1억원 이상) 인 경우



② 중앙장비도입심의 대상 장비인 경우(3천만원~1억원 미만 등)



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업무프로세스(i-Tube)



사.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1) 관련 규정

구분	법률 및 규정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
가이드라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 주요 내용

- 과제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 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관 지정

※ 계정 단위 별 적립한도: 연구개발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3) 계상 및 집행원칙

구분	내용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 ※ 3가지 용도 외의 비용(연구장비 신규 구축비, 성능향상비, 신규 장비임차비 등)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비특례)로 계상하여야 함 • 협약 시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협약 이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계획에 제시된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 후 협약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각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소요경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시설·장비비(특례)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에 계정대체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최초 분할금액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하여야 하고, 전체 금액은 해당연도 과제종료일 30일 이전에 대체 완료하여야 함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시, 해당 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4. 연구재료비

가. 정의

구분	내용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 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나. 계상기준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3)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 가능

다. 집행원칙

- 1)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납품 및 검수	대금결제
300만원 미만 (부가세포함)	연구책임자 물품 수령 및 확인 후 사진 제출	연구비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2)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납품 및 검수	대금결제
300만원 이상 (부가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검수 장소에 업체 담당자가 물품 납품 후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 지정한 대리인) 입회하에 검수. • 단, 재료의 특성에 따라 운반의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료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진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담당자 : 검수완료 후 연구비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 연구관리자 : 검수확인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수령 후 대금 지급처리

※ 21.9.1 이후 일반산업체 과제에서 재료비 사용 시 중앙구매 및 검수 대상에 포함됨

※ 외자구매 (국외 수입)일 경우 중앙구매 대상 아님

라. 제출서류

1)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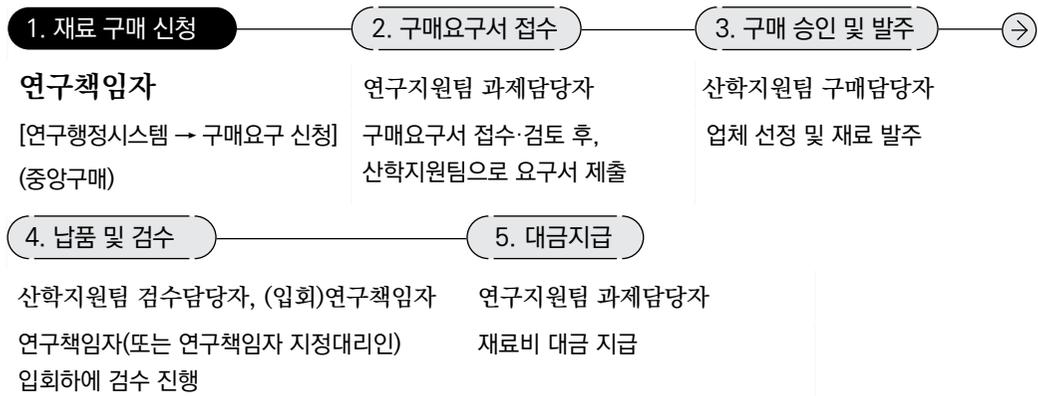
- | | |
|-----------------------------------|---|
|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증빙자료 |
| <input type="checkbox"/> 연구비지급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재료 사진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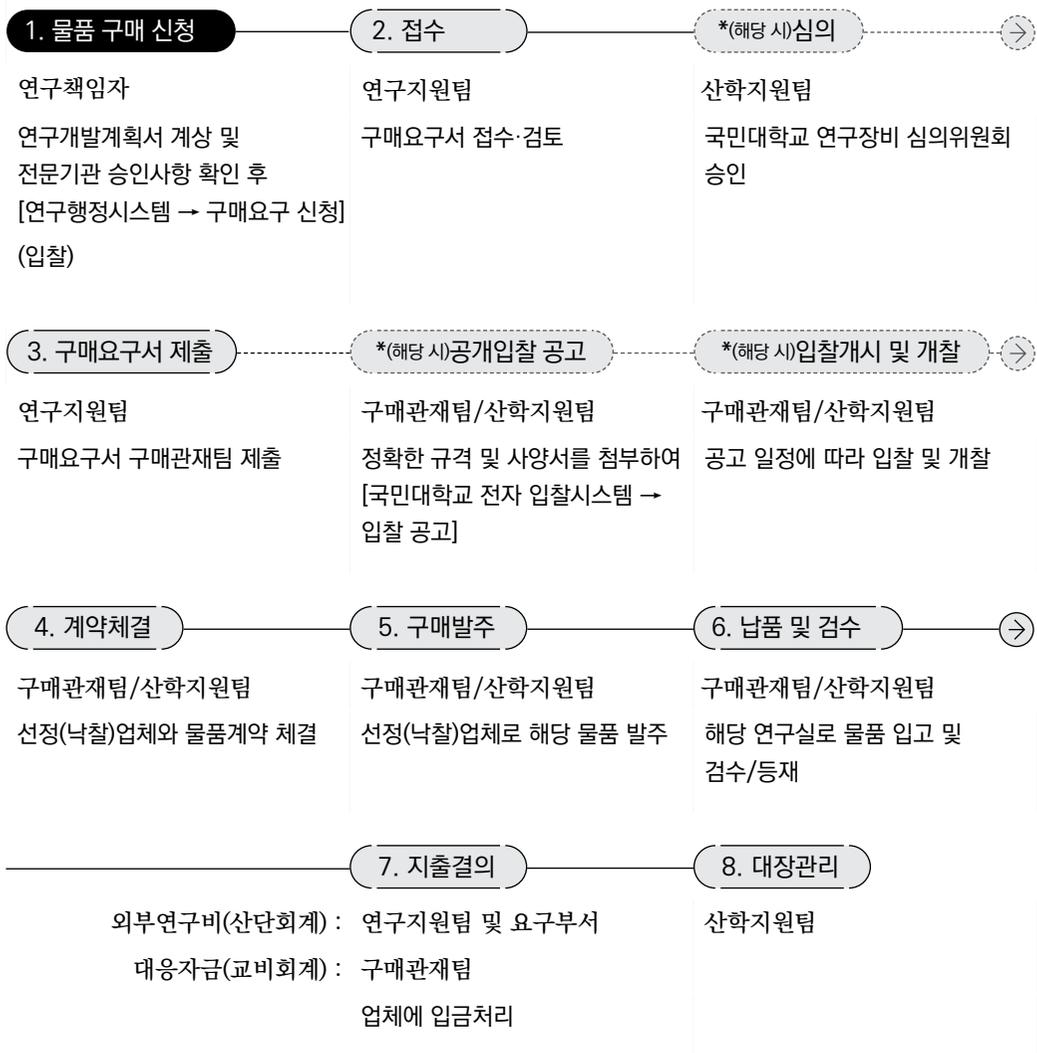
2) 중앙구매

- | | | |
|----------------------------------|--|--|
|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증빙자료 | 비고 연구관리 담당자 |
| <input type="checkbox"/> 구매요구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서 계상부분 발취 |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검수확인서 |

마. 중앙구매절차



바. 집행원칙



사. 해외물품 관세감면 및 화학물질 수입

1) 관세감면제도

- 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를 면세하는 제도로서, 개인통관이 아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입된 물품에 한해 관세 감면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지원함
- ② 동일 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 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 신청을 진행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며, 통상 교육용으로 통관될 경우 통상 20%의 관세감면 혜택이 부여됨
- ③ 관세 감면된 물품은 관세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일정기간(통상 3개월 또는 1년) 세관에 사후관리를 받으므로 수입된 물품을 통관시 지정된 위치에 관리해야 함

2) 관세감면 필요서류

- ①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 ② 관세감면 신청서 용도확인서
- ③ 국내제작 곤란 물품(기계에 한함) 추천신청서

3) 관세감면 시 유의사항

관세감면 혜택은 개인이 아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명의로 수입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 완료 후 관세는 반드시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 연체 시 국민대학교 모든 수입통관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4) 화학물질 수입

- ① 화학 물질을 국내 공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에 의해 수입 전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함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령 [2015.01.01.시행.] (약칭: 화관법)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화학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5.01.01.시행] (약칭: 화평법)

- 신규 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② 화학물질 수입 절차

- 수입 전 수입할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사전 사항을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담당자와 협의

5. 연구활동비

5-1.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가. 정의 및 계상기준

- 1) 정의 :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2) 계상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제외하고 계상

나. 집행원칙

- 1) 직접비 중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5-2.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가. 정의 및 공통사항

- 1) 정의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 2) 공통사항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계 기준)

나. 계상기준

- 1) 기술도입비 :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2) 전문가활용비 : 지급체계에 맞게 계상
-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다. 집행원칙

1) 국내전문가활용경비 지급기준

A급	B급	C급
자격기준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록 기관·단체·기업 등의 기관장 및 임원 • 저명인사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분야 14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 학위 또는 전문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분야 9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 학위 취득자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 취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자문료(시간)		* 제세 포함
15만원 이내	12만원 이내	10만원 이내
강연료		* 제세 포함
50만원/회 이하		40만원/회 이하

2) 국외전문가활용경비 지급기준

A급	B급	C급
자격기준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대학 전임교원, 선임급 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자격기준이 국내 전문가 활용구분 'B'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자격기준이 국내 전문가 활용구분 'C'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문료(일)		
		* 제세 포함
\$700 이내	\$400 이내	\$300 이내
강연료		
		* 제세 포함
\$1,500/회 이하	\$1,000/회 이하	\$700/회 이하

※ 국외 전문가 국내 입국 시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단, 실비 결제만 가능)

3) 번역료, 원고료 및 통역료 지급 기준

* 제세 포함

번역료	원고료	통역료
한국어 ⇒ 외국어 : 5만원 이내	국문 원고 3만원 이내	수행 통역 30만원 이내
외국어 ⇒ 한국어 : 3만원 이내	외국어 원고 5만원 이내	* 1인당 1일 기준
A4용지 1매(25행),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2인 이상 참여한 경우에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지급하여야 함.		국제회의 통역 30만원 이내 * 1인당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

4) 전문가 활용비 사례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라. 제출서류

1) 기술도입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기술도입계약서
-
-
- 기술검수조서 등

2) 전문가 활용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 연구비지급신청서
-
-
- 전문가활용 내역서

증빙자료

-
- 활용전문가 이력서
-
-
- 계좌사본
-
-
- 신분증사본
-
-
- 전문가 활용 관련 자료(강의자료, 사진 등)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 용역계약

용역계약	연구지원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계약체결 필수)
	<div style="text-align: center;"> <h4>계약체결 시 필요서류</h4> <p>총 11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용역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input type="checkbox"/> 법인 등기부 등본 <input type="checkbox"/> 법인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원본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 확인원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input type="checkbox"/> 납품실적 증명원(계약금액 이상의 실적증명) <input type="checkbox"/>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견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입금 통장 사본(법인 명의 통장) </div>

※ 계약서 내용 중 계약이행에 따른 검수완료 후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여야 함.

※ 하자보증보험 미가입시 하자보증이행각서 첨부 필수.

5-3. 회의비

가. 정의: 회의장 임차료, 숙기로,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사용기준	회의 중 식비, 음료 및 다과비를 계상, 회의비 1인당 단가 : 3만원
집행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기관 참석자가 포함된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연구용역, 일반산업체과제, 간접비 지원금, LINC+사업의 기타사업 운영비, 지원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집행가능 결제시간 기준으로 06:00~23:00에만 집행가능 함 단, 학술진흥법 적용 받는 사업, 연구용역, 일반산업체과제, 간접비 지원금, LINC3.0사업 '기타사업 운영비', 지원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2.1.시행)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지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카드 집행 회의록 작성(일자/장소/참석자/회의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

다. 부당집행기준

구분	부당집행 내역
집행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회의비 : 초과금액 회수 회의록 상의 참석자 수와 영수증의 수량이 비정상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당일 회의비가 아닌 식당의 기프트권 또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할인권 구매 1인 회의비(식사비, 커피 등) 집행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 되어있는 회의비 주말 및 공휴일 집행 (사유서 첨부) 커피 적립금으로 결제하여 선결제 후 회의비 처리한 금액 내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회의 수당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간 회의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타 기관 소속 공동연구원과의 회의도 단일기관 내부회의로 불인정함. ※ 단,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사업참여 타 기관 소속 공동연구원도 외부인력으로 인정하여 회의비 집행 가능.
중복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비(식대 포함)를 지급받고 실비로 회의비 집행

사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지에서의 회의비 집행(여비 중 식비 차감 시 가능)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 일반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술집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곳 (포털사이트에서 가맹점 검색 → 상세분류가 이자카야, 호프 등으로 분류시 불인정) • 연구자 집 근처 또는 회의장소와 거리상 이동이 불가능한 원거리인 곳
-------	--

※ 중소벤처기업부 : 회의록에 참석자의 서명날인 없이 집행된 회의비 불인정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연구비카드매출전표
- 회의록(50자 이상 작성)

* 세미나개최비: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세미나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5-4. 출장비

가. 정의 및 계상기준

1) 정의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체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2) 계상기준 : 국민대학교 여비규정

3) 여비지급 구분

구분	해당자
특 1 호	총장
특 2 호	부총장
특 3 호	교무위원
제 1 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사무직 4급 이상(5급 팀장 및 팀장급 임시직 포함), 명예연구교수
제 2 호	사무직 5 ~ 6급 직원, 기능직 6등급 이상 직원, 외부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계약교원
제 3 호	사무직 7 ~ 9급 직원, 기능직 7등급 이하 직원, 행정기능직, 고용원, 연구원, 임시직원, 외부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계약연구원, 대학원생, 학생

단, 위 특호구분은 보직교원의 자격으로 출장시에 한하여 적용함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지급대상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지급방식	개별지급 : 출장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비과세)
지급원칙	1. 원래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2. 원래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국외여비 또는 변경(출장지 등) 시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자체승인 후 지급가능 ※ 지원기관 규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여비 신청 요망
사전신청 (국외출장의 경우)	1. 사전계획에 의한 출장원칙 / 출장명령부 제출 2. 국외출장 전 여비지급신청 가능 3. 귀국 후 국외출장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출장증빙서류 제출
이중지급 금지	1. 기내식, 기내숙박 : 총 식비, 숙박비에서 감액한 후 지급 2. 타 기관에서 숙박비 또는 식비 등 일부 지원 시 해당 금액을 미지급

국내여비

1) 국내 여비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夜당)	식 비 (1일당)
특 1 호	1 등급	특등정액	1등정액	60,000	실 비	80,000
특 2 호	1 등급	특등정액	1등정액	55,000	실 비	70,000
특 3 호	1 등급	1등정액	2등정액	45,000	실비 (상한 200,000)	60,000
제 1 호	1 등급	1등정액	2등정액	40,000	실비 (상한 150,000)	60,000
제 2 호	2 등급	1등정액	2등정액	35,000	실비 (상한 120,000)	50,000
제 3 호	2 등급	1등정액	2등정액	30,000	실비 (상한 100,000)	40,000

비 고

1.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KTX 특실, 2등급은 KTX 보통실 또는 새마을호 특실을 말한다.
2. 수로여행 시 특호 및 1호 해당자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항공운임란 중 1등 정액은 Business Class, 2등 정액은 Economy Class를 말한다.
4. 기타 운임의 경우에는 철도 운임 또는 우등고속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워크숍,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해당 주최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명시하거나 숙박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급하는 여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여비

2) 국외 항공 운임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의 특1,2호 해당자	1등 정액
별표 1의 특3호 및 제1호 해당자	1등 정액 또는 2등 정액
기타의 자	2등 정액

- ① 1등 정액은 Business Class, 2등 정액은 Economy Class (Premium Economy 포함)를 말하며, 운임에 좌석 지정비, 수하물비(15kg까지만 인정)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별표1의 특3호 및 제1호 해당자가 1등 정액으로 운임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부 연구과제 연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미불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출장일 기준)	식비
특 1호	가	120	450	200
	나	120	400	180
	다	120	320	160
	라	120	300	150
특 2호	가	100	350	170
	나	100	300	160
	다	100	220	140
	라	100	200	110
특 3호	가	80	310	150
	나	80	260	130
	다	80	190	110
	라	80	170	100

제 1호	가	70	300	140
	나	70	250	120
	다	70	190	100
	라	70	170	90
제 2호	가	60	250	120
	나	60	200	100
	다	60	160	80
	라	60	140	70
제 3호	가	50	200	110
	나	50	160	90
	다	50	130	70
	라	50	110	60

4)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가등급

동경,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대만, 북경,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튀르키예

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태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비아, 수단, 남수단,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케냐,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토메프린시페, 탄자니아,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라크, 요르단, 코트디부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라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피지, 캄보디아, 필리핀
남,북 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페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비 고 :

- 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위의 구분과 같다.
- ②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③ 국외여비 산정 시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고시환율(KEB하나은행 기준) 현찰 살 때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워크숍,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의 경우 해당 주최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명시하거나 숙박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내역
서류구비	출장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학회자료, 교통비 영수증 등)
여비지급 기준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액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급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부교수 외의 연구자가 KTX 특실 이용 : 일반실과의 차액 회수 - 국내선 항공 1등석 이용 : 2등석 정액과의 차액 회수 - 사전승인 받지 않고 비즈니스석 이용 : 이코노미석과의 차액 회수 - 여비 기준 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집행한 경우 : 초과분 회수 ② 출장지의 국가 등급(목적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 집행한 경우 : 초과분 회수 ③ 학회 개최지 또는 학회 지정 숙박업체가 아닌 곳에서의 숙박비 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실비 집행한 경우 : 초과분 회수 ④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출장 일정에 따른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일정 단축 또는 취소 후 여비 미정산 : 차액 회수 • 출장 일정 전후로 불필요한 여비 지급 : 초과분 회수 • 출장 목적 종료 후 개인 사정으로 체류한 경우 : 해당 기간 여비 지급분 회수 • 출장지 이동 중의 불필요한 숙박비 산정액(기내숙박, 경유지 공항 대기) : 해당 금액 회수
중복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등에서 숙식을 제공 받고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 여비를 정액으로 수령 후 숙박비, 회의비 등을 실비로 이중 집행한 경우 • 출장일정이 변경되어 교통비 재결제 후 이전 결제 건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 기내식, 기내숙박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
집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출장으로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 학회 등록 후 학회에 불참하고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 비참여연구원의 여비 지원

라. 제출서류

1) 국내여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 지급신청서
- 여비 지급내역서

증빙자료

- 출장승인서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교원지원팀을 통해 출장 신청
 - 출장관련 증빙서류
 - 학회·세미나 참석 : 참가확인증, 팸플릿, 명찰
 - 자료수집, 실험, 단순회의의 참가 :
'공문, 이메일, 회의록, 출장보고서' 중 택 1
 - 비수도권 출장 시 운임 증빙서류(출장 시작일 및 종료일)
 - 기차, 버스 : 승차권
 - 항공 : 항공권 인보이스
 - 숙박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
 - 카드 승인번호가 기재된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인터넷 업체 예약서류만 제출 시 처리불가함.
 - 이용내역서 제출(숙박일수, 이용자, 호텔서비스 이용료 포함여부 확인용)
- * 자차를 이용한 경우 현지 영수증 증빙 또는 '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추가 제출(동승자는 지급 불가)

※국의 출장시 여행자보험가입비,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함.

2) 국외여비

출장 전 사전신청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 국외여비지급내역서

증빙자료

- 출장신청승인서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은 '교원지원팀'을 통해 출장 신청
- 항공권 인보이스(여행 일정 및 기내숙박 확인)
- 출장관련 증빙서류
 - 학회·세미나 참석 : 팸플릿
 - 자료수집, 실험, 단순회의의 참가 :
'공문, 이메일, 일자별 출장예정내역서' 중 택 1
- 환율표(KEB하나은행, 여비신청일 최초고시)
 - '현찰 살 때' 기준 적용

출장 복귀 후 - 2주 이내 제출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국외출장보고서

증빙자료

출장관련 증빙 추가 제출

• 학회·세미나 참석 : 참가확인증, 명찰

• 자료수집, 실험, 단순회의 참가 :
일자별 출장보고서(사진 포함)

※ 공식적인 학회·세미나 참가 일정 외에 전문가 미팅 및 자료
수집 일정이 포함된 경우 관련 증빙(회의록) 추가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원

5-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나. 집행기준

- 1)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집행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계약 체결 후 집행할 수 있음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 ②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집행원칙

구분	내용
구매시기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긴급상황시 1개월)이전에 구입완료(검수) 2. SW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 가능 ※ 외자 물품 또는 공개입찰을 통한 중앙구매는 2~5개월 소요되므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종료 4~7개월 전에 구매요구 신청
구매방법	1. 본교 구매규정에 따라 중앙구매 ※ 2,000만원 초과 물품은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2~3개월 소요)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검수기준) 3. 소프트웨어 ① 중앙구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적 라이선스 및 100만원 이상 ②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 별도의 라이선스 기간이 있거나 100만원 미만
납품 및 검수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검수 장소에 업체 담당자가 물품 납품 후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지정한 대리인) 입회하여 검수
대금결제	1. 검수담당자 : 검수완료 후 연구비 카드결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2. 연구관리자 : 검수확인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수령 후 대금 지급처리

라. 지원기관별 특이사항

구분	내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1. 소프트웨어 활용비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연구비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서

5-6. 연구실 운영비

가.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중앙구매	기기·비품류는 중앙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류는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다. 제출서류

① 연구 책임자 직접구매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연구비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견적서(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 구입물품사진

② 중앙구매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구매요구신청서

증빙자료

- 견적서(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검수확인서

5-7. 연구인력지원비

가. 정의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학회·세미나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식대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비고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대상 :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2.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학회/세미나 3. 사전출장승인신청 4.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고시 금액 또는 참가비에 따르며, 출장비는 본교 여비기준에 따르되, 교육훈련기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일반편성 	
야근식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대 1인당 단가 : 2만원 이내 2. 결제시간 기준으로 평일 17:00~23:00, 토요일 및 공휴일 11:00~23:00에만 집행 가능함 	야근·특근 시 교통비 지급 불가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지급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비카드 집행 2. 초과근무일지 작성 및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 :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1인당 1일 1만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단, 수행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을 따르되 이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출서류

1) 국내외 교육훈련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출장신청증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교육수료증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2)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학술행사 안내 자료(포스터 등)

3) 야근·특근 식대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초과근무일지

라. 학회 등록 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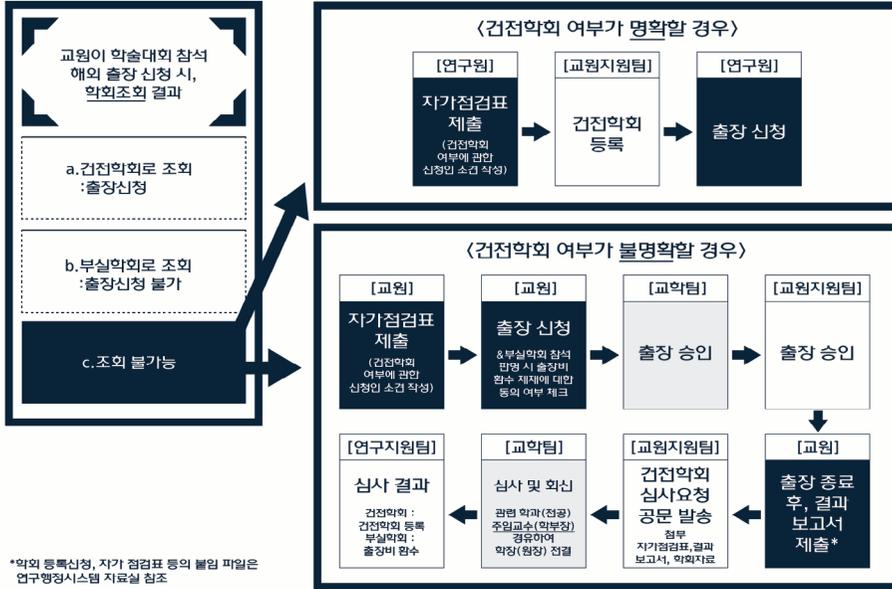
1) 국내 학회

- ① 국내 학회는 부실학회 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 ② 연구행정 시스템에서 국내 학회명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회등록 신청양식(붙임1)을 작성하여 연구기획팀 담당자에게 제출
- ③ 연구행정 시스템 내 학회등록 완료된 이후 출장 신청

2) 해외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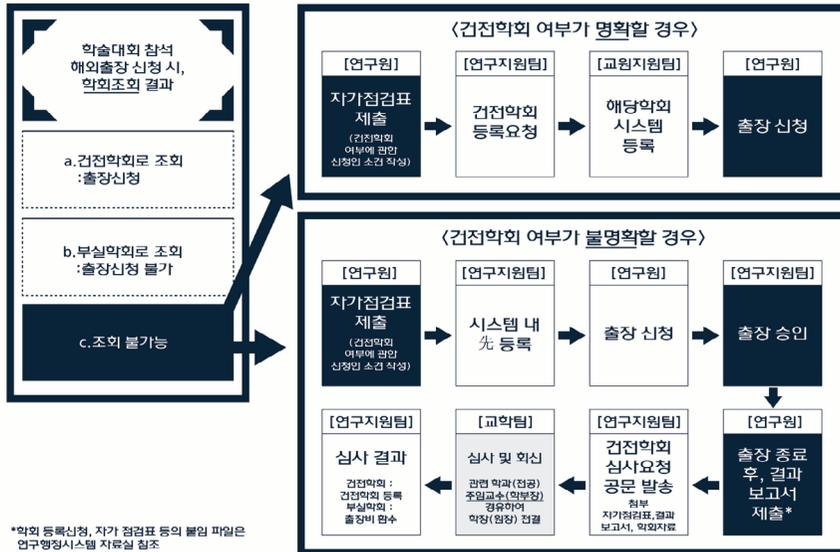
① 교원

1. 교원



② (학생)연구원

2. (학생)연구원



※ 학회 등록 신청, 자가 점검표 등의 붙임 파일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5-8.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가. 정의 및 계상기준

- 1) 정의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나. 집행원칙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 ①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②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증명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자체규정

5-9. 종합사업관리비

가. 정의 및 계상기준

- 1) 정의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계상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5-10.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가.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나. 집행기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사용기한을 준용함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검수확인서
- (해당시) 계약서

5-11. 그 밖의 비용

가. 정의: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나. 집행원칙

구분	내용
문헌구입비	1. 해당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구입 2. 문헌구입내역서 작성
논문게재료	1.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논문게재료 2. 지원기관이 사업 지원 시 '사사표기'를 명시한 경우 반드시 논문게재시 이를 표기하여야 함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1.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으로 실비를 청구 2. 공공요금은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로 집행 가능

다.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내역
기간 외 집행	• 연구기간 외에 사용한 공공요금 (예 : 연구개시 전 전화료 등)
연구와의 관련성	•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판공비, 화환구입비 등)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해당 연구에 필요한 전문저널 구독료 중 연구기간을 벗어난 기간의 금액 • PPT 제작 등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 집행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 • 연구계획서 예산에 미계상된 학술용 전자정보 (Web-DB, e-Journal)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 학위 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등

라. 지원기관별 특이사항

지원기관	내용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분야	• 논문 사사표기 관계없이 집행가능
	인문사회 분야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 사용가능 • 논문사사표기 관계없이 집행 가능하나 성과물로는 인정되지 않음
산업통상자원부	논문 게재료	• 전문기관 성과 미등록 시 불인정

마. 제출서류

1) 문헌구입비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 도서구입내역서(ISBN내역포함)
-
-
- 거래명세서
-
-
- 검수검사조서

2) 논문게재료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3)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
- 거래명세서
-
-
- 견적서 (1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 포함)
-
-
- 인쇄물 사본

6. 연구수당

가. 정의 및 계상기준

- 1) 정의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2) 계상기준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사용기준 제26조 제 3항에 따른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나. 집행원칙

- 1)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불가>
- 2)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불가
- 3)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함)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4)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5)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단계를 의미함)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다. 부당집행기준

-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원래 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함)을 20%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right)$$

-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③ 직접비 사용비율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총액}}$$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1)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2)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3)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4)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마.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접수)

연구비지급신청서

○ 증빙자료

기여도평가서 (전체 참여연구원 평가)

7. 보안수당

가. 정의 : 시행령 제 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계상기준

- 1) 보안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음
- 2)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
- 3)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접수)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연구비지급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증명

라. 유의사항

- 1)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 이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계상된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인별 인건비계상액의 3% 이내에서 개인별 차등 지급 또한 불가함.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추가되거나 기존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구분	연구책임자(A)	연구책임자(B)	연구책임자(C)	연구근접 인력지원(D)
인건비계상액	10,000 (현금)	5,000 (현물)	3,000 (미지급인건비)	3,000 (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 한도	300	150	90	90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계상기준: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다. 집행원칙

- 1)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 및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2)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3)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4)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접수)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위탁연구계약서 및 계획서

위탁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가. 정의

구분	내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계상기준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기관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2) 연구개발부담비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접수)

- 연구비지급신청서

증빙자료

- 계좌이체증명
-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10. 간접비

가. 간접비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구분	내용
인력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구분	내용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사업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 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기반시설 장비구축 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 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차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 · 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 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3) 성과 활동지원비

구분	내용
과학문화 활동비	<p>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 인식 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p>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나. 계상기준

구분	계상기준		비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직접비*의 20.04% 이내 (2024.02.29)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 비율'을 따른다.
연구용역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사업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 「기타 특별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민간과제 · 산업체과제 · 산업자문 · 대가가 없는 기부금 과제	1천만원 이하분	1천만원 이하 연구비의 7.5%	예시) 산업체 1,800만원 과제 a) 1,000만원 * 7.5% = 750,000원 b) 800만원 * 15% = 1,200,000원 ----- a) + b) = 1,950,000원
	1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 연구비의 15%	

※ 매출부가세가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산정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을 따름.

※ 민간과제/산업체 과제는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 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등에 적용하여 관리한다.

※ 연구시작일이 시행일 이후 계약 건을 기준으로 변경 비율을 적용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세부 집행 기준

- 1) 지급대상 : 당해 학년도에 간접비가 입금된 연구과제의 연구자 및 지원인력
- 2) 정부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	내용																
대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 																
지급시기 및 방법	당해 학년도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및 평가를 완료 후 차년도에 연 1회 현금으로 지급																
지급기준	<p>연구책임자에 대한 당해 학년도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연구부문 산학협력실적'을 반영하여 계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 $\left(\frac{\text{[연구책임자별 당해 학년도 최종 간접비의 합]} \times \text{지급비율}}{\text{계열 구분}} \righ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계열 구분</th> <th>등급 구분</th> <th>등급별 인원</th> <th>지급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인문사회 (예·체능 포함)</td> <td>A</td> <td>상위 90% 이내</td> <td>10%</td> </tr> <tr> <td>/이공계열</td> <td>B</td> <td>90% 초과 95% 이내</td> <td>9.5%</td> </tr> <tr> <td></td> <td>C</td> <td>95% 초과 100% 이내</td> <td>9.0%</td> </tr> </tbody> </table> <p>※ 비전임교원 등 교원업적평가 미대상 연구책임자에 대한 지급비율 : 10% 적용</p>	계열 구분	등급 구분	등급별 인원	지급비율	인문사회 (예·체능 포함)	A	상위 90% 이내	10%	/이공계열	B	90% 초과 95% 이내	9.5%		C	95% 초과 100% 이내	9.0%
계열 구분	등급 구분	등급별 인원	지급비율														
인문사회 (예·체능 포함)	A	상위 90% 이내	10%														
/이공계열	B	90% 초과 95% 이내	9.5%														
	C	95% 초과 100% 이내	9.0%														
지급절차	산학협력단에서 공고한 기한 내에 연구행정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함.																

3) 민간 연구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구분	내용								
대상 과제	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과제								
지급시기 및 방법	연구비 입금 및 연구결과물 제출이 완료된 후 현금으로 지급								
지급기준	<p>연구과제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출식 $\left(\frac{\text{연구과제별 최종 간접비} \times \text{지급비율}}{\text{연구과제 계약일}} \righ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구과제 계약일</th> <th>지급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013.02.28. 이전</td> <td>25%</td> </tr> <tr> <td>2013.03.01. ~ 2017.12.31.</td> <td>60%</td> </tr> <tr> <td>2018.01.01. 이후</td> <td>25%</td> </tr> </tbody> </table>	연구과제 계약일	지급비율	2013.02.28. 이전	25%	2013.03.01. ~ 2017.12.31.	60%	2018.01.01. 이후	25%
연구과제 계약일	지급비율								
2013.02.28. 이전	25%								
2013.03.01. ~ 2017.12.31.	60%								
2018.01.01. 이후	25%								
지급절차	연구비 입금 및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연구행정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함.								

4)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제한 대상

- 징계 등으로 본교 교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경우
-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이 제한된 경우
- 본교 ‘외부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내규 시행세칙’에서 정한 간접비 산정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

-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간접비의 30% 이상인 경우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세부 집행 기준

- 1)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공계열(과학기술분야) 실험실(연구실)
- 2) 지원 금액 : 수행중인 연구과제 ‘인건비’의 1% 이내에서 지원
 - ※ 인건비에는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함.
 - ※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
- 3) 지원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정산 담당자와 안전관리비 지원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 한 후 정산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첨부서류로 제출함.

4) 지원범위

구분	내용
보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구입하거나 전파하는 데 쓰였던 금액
교육·훈련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건강검진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실험실 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기계설비 방호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보수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2. 연구실 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2.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여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설비 안전검사비	연구 및 실험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에 사용한 금액

마. 과학문화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

1) 지원 대상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간접비를 고시 비율만큼 징수한 과제
- ② 과학문화활동비 지출을 지원(주관)기관이 요청한 과제
- ③ 과학문화활동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경우

2) 지원 금액 :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주관)기관 요청 또는 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인 경우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 절차 :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협약담당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면 사용용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가능 여부를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함.

4) 지원범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지원(예) : 연구개발 관련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경비, 성과전시회 등 행사 참가를 위한 경비(참가비, 부스 설치비, 장소 대여료, 책자 제작비 등)
- 연구과제 참여 기관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제작, 홍보 행사를 위한 과학문화활동비 비용 분담
-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공문 등을 통해 지출을 요청한 과학문화활동을 위한 비용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과학문화활동을 위한 비용

제3장 연구계획의 변경

1. 중요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승인사항)

1) 혁신법 제 11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시행령 제 14조 제 2항 제 2호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②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③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구개발비의 변경	9.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 및 제74조
-----------	----------------------------------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2. 경미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통보사항)

1)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 및 제74조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참고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기관 변경	연구개발 기관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기관정보 변경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인력 변경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연구자 외 변경	연구지원인력 등	통보
연구개발기관 외 인력	연구개발기관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변경	통보	
연구 개발 목표 · 내용	연구개발 목표	최종/단계 목표변경	상호협의 (승인)
		성과 및 성능 목표	상호협의 (승인)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 내용	추진전략, 방법 등	통보
		기술기여도	상호협의 (승인)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 (현금 / 현물간 변경 포함)	승인
	인건비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활동비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승인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국제공동연구비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보유현황 변경	통보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승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승인
	연구수당	연구수당 감액	통보
		연구수당 증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 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승인
	간접비	간접비 증액	통보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연구개발비 계좌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연구 기간	연구개발기간 변경	전체 / 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상호협의를 (승인)
기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통보

3. 협약 변경 절차



4. 국외수혜정보 24.2.6.(화)부터 (법령 시행일)

가. 보고주체 : 국가 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나. 보고범위 : 국가R&D과제 수행기간 중*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연구장비·시설, 연구인력, 겸직 등)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용역)·인력·장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약 시점에서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외국과제 신청 현황 등)도 포함

**각종 컨설팅(자문)·세미나·강연·겸직 등 포함. 단, 순수 학술활동(강의, 학회참석·발표, 논문·학술서적 기고 등)의 경우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미화 5,000달러(USD)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고

다. 보고항목 : 지원·지급 출처, 지원·지급 사유(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인력/시설/보수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

* 수행기간이 2024.2.15.~2027.2.14.인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및 수행을 가정한 예시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시	00국 00기업	000에 관한 연구수행	'22.4.1~ '24.3.31	총 5만불(USD)	연구개발과제 선행연구
	00국 00대학	000 연구인력 지원	'24.3.1~ '25.2.28	박사급 2명	연구개발과제 참여
수행중	00국 00연구소	000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연구개발과제 무관

라. 적용시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4.2.6.) 이후 공모(공고) 또는 지정되어 신규협약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적용

* 대통령령 제34174호 부칙 제2조(연구개발계획서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며, 시행일 이전 계속과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마. 보고시한 : 협약 시(연구계획서 제출) 및 과제 수행 중 국외수혜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모두 동일

바. 보고방법 : 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 수혜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수행 중 IRIS 내 연구자 정보(NRI)에서 현행화

※ IRIS(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NRI)에서 연구자가 1회 입력하면 협약(변경) 시마다 활용 가능(매회 신규 입력 불필요)

제4장 연구비 정산 및 실적보고

1. 연구개발비 정산

가. 개념

- 1) 연구개발비 정산이란 연구비관리 업무의 최종 단계로서 연구개발비의 집행이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준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하여 연구비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지원기관의 정산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본교 내규 및 시행세칙의 기준을 따름

나. 연구개발비 정산 주체 및 업무

연구책임자

- ① 수행 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② 연구비 관리자 및 회계감사 부서장의 보완 또는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 작성

연구비 관리자/회계감사 부서장

- ①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종료 및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을 마무리하도록 사전 안내함
- ② 연구책임자로부터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비목별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함
- ③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서류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하여 보완 조치함
- ④ 정산이 완료 된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다. 연구개발비 정산 주요 점검사항

- 1)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보완
 - ① 연구책임자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 확인
 - ② 필요시 제출서류의 보완 및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요청
- 2) 민간부담금 부담 여부 확인
 - ① 협약서 및 계획서 상 민간부담금 부담내역에 따라 현금 및 현물 투입 여부 확인

- 1) 연구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상 연구비 계상 및 변경 확인
 - ① 계획서 상 연구비와 사용실적보고의 비목별 연구비 일치 여부 확인
 - ② 비목별 연구비 계상 기준 위반 여부 확인(연동 비목 포함)
 - ③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나 승인 없이 비목변경 여부 확인

- 2) 연구종료일에 임박하거나 종료 후 집행여부 확인
 - ①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장비 및 재료 집중 구매 진행 여부
 - ②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여부

- 3) 참여연구원 등 연구비 지급대상자 및 연구기자재 확인
 - ① 비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여비, 수당 등 지급여부
 - ② 전문가활용비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여부
 - ③ 당해연도에 구입한 연구기자재의 설치 및 자산등록 여부

라.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종료일과 연구비 잔액, 발생이자 등을 안내하여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연구비 집행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연구과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집행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처리하거나 반납하며, 지원기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고 집행잔액 및 과실금 처리 등 연구비를 해당과제 단위로 결산 하여야 함

2. 사용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 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 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단,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등록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당연도 종료일 이후 수정 보완은 가능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참여연구자의 총 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의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통합관리되는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 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단계 구분이 없으면 총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 직접비 사용비율 (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은 고려하지 아니함)이 100분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단계를

※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 ② 간접비 사용비율

$$\text{간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③ 직접비 사용비율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처리

〈통합 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④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 ⑤ 간접비 사용비율

$$\text{간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⑥ 직접비 사용비율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 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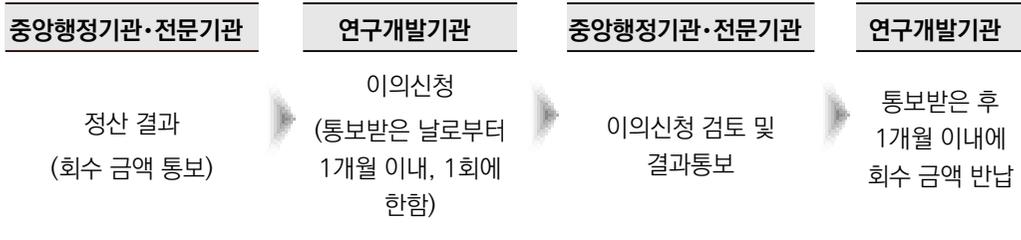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
-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 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달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마. 정산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5장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제도

1. 특허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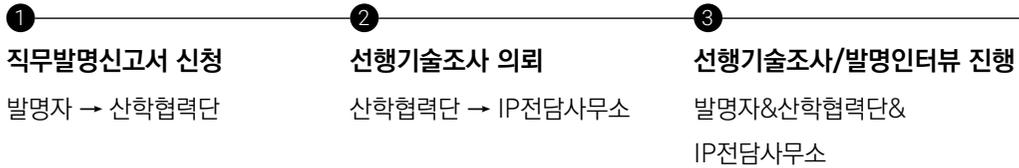
가. 국내 지식재산권

1)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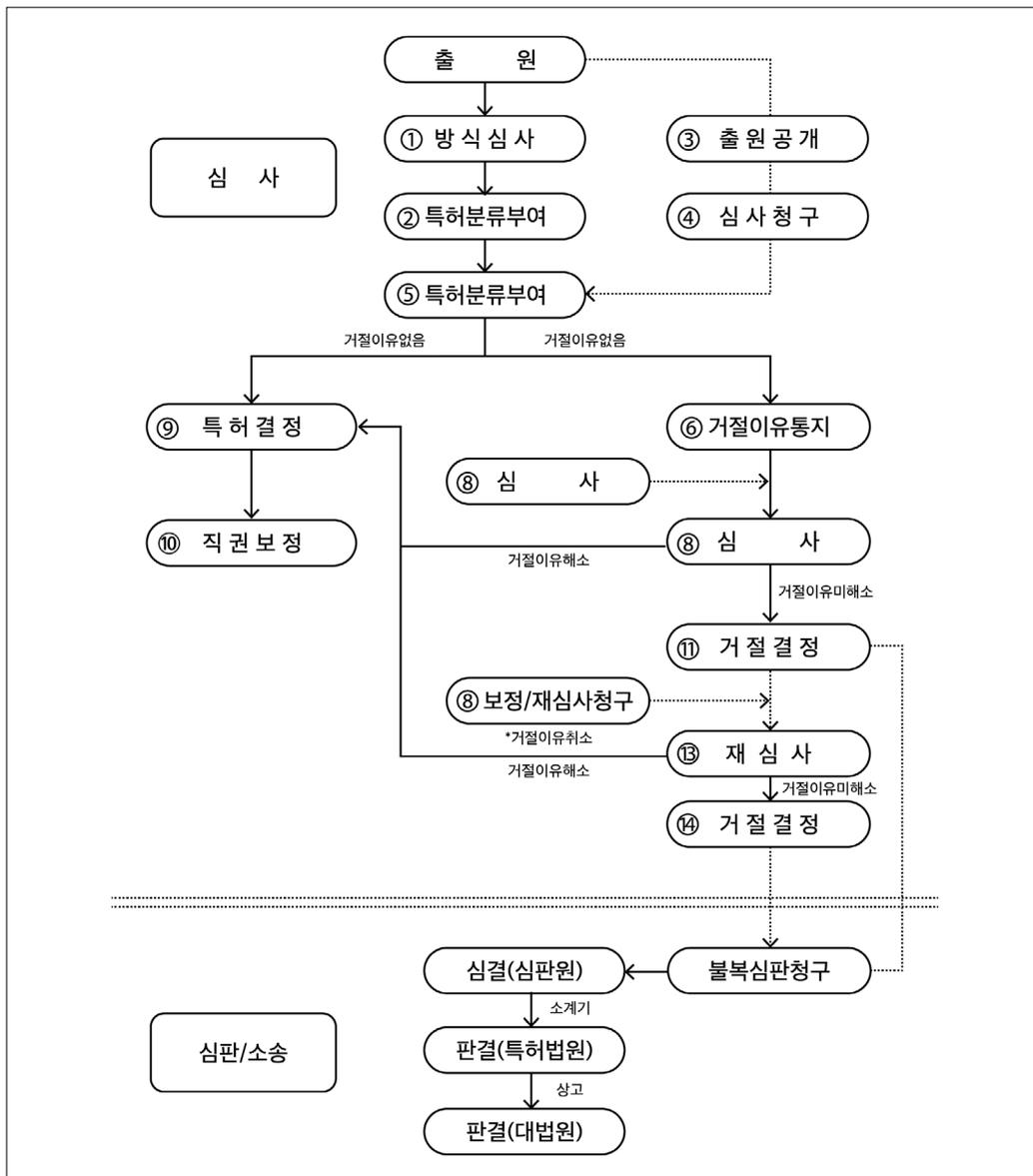
구분	내용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일반/프로그램)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국민 포털사이트」의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직무발명신고서 신청 등록 ※ 제출서류 : 발명설명서, 양도증 (시스템 상 다운로드 가능) 										
신청대상	<p>국민대학교 교원</p> <p>[특허/실용신안] IP전담사무소의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인터뷰를 통해 등급에 따라 출원·등록 지원여부 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진행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S</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지원 (해외출원 등급 평가 불필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내출원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출원(보완 계획 有 경우) 또는 미승계(보완 계획 無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승계</td> </tr> </tbody> </table> <p>[상표] IP전담사무소의 간략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출원·등록 지원여부 결정</p> <p>[디자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등록 지원</p> <p>[저작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등록 지원</p> <p>* 각 권리의 종류에 따라 등록 후 연차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 결정될 수 있음</p> <p>*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p>	등급	진행사항	S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지원 (해외출원 등급 평가 불필요)	A	국내출원 지원	B	가출원(보완 계획 有 경우) 또는 미승계(보완 계획 無 경우)	C	미승계
등급	진행사항										
S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 지원 (해외출원 등급 평가 불필요)										
A	국내출원 지원										
B	가출원(보완 계획 有 경우) 또는 미승계(보완 계획 無 경우)										
C	미승계										
신청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 기재된 논문, 학회지, 기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자료가 공개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특허권리 확보 불가능 • 지식재산권 정규 프로세스는 본교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서만 진행 가능 • 공동출원 건의 경우 공동출원기관의 담당자 정보 필수 입력 및 타 기관에서 주관인 경우 [전담특허사무소] “공동출원기관에서 진행” 선택 										

2) 절차 : 출원까지 약 2개월 소요

•출원절차(특허/실용신안)



•심사절차(특허/실용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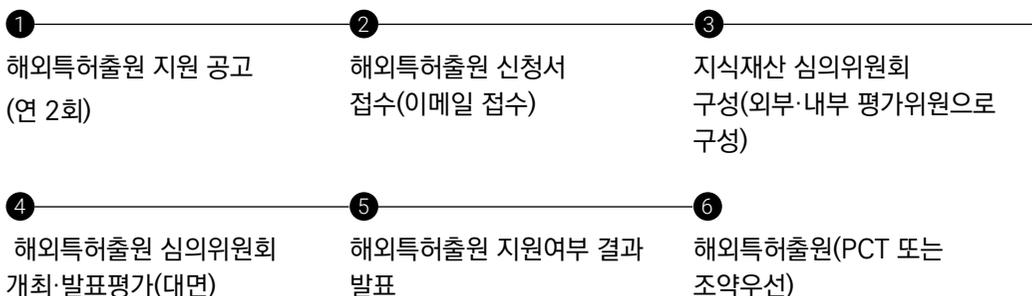


나. 해외 지식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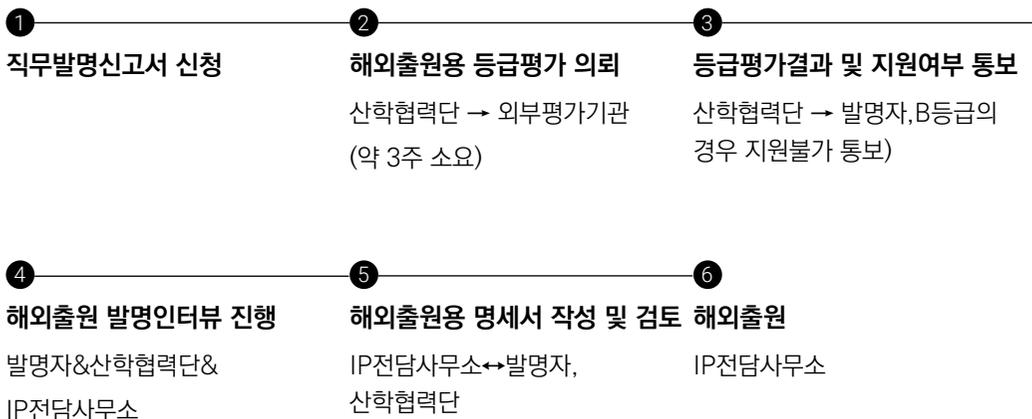
1) 지원제도

구분	내용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								
신청방법	[정기평가] 해외특허출원 지원 공고(연 2회)에 따라 필요서류 이메일 접수 [상시평가] 「ON국민 포털사이트」의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직무발명신고서신청 등록								
지원기준	[정기평가] 해외특허출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등급평가 [상시평가] 외부평가기관의 해외특허출원 등급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진행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S</td> <td>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이상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지원불가</td> </tr> </tbody> </table>	등급	진행사항	S	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이상 지원	A	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B	지원불가
등급	진행사항								
S	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이상 지원								
A	PCT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B	지원불가								
	• 당해 학년도 예산 소진시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출원절차(특허) 정기평가를 통한 출원



3) 출원절차(특허) 상시평가를 통한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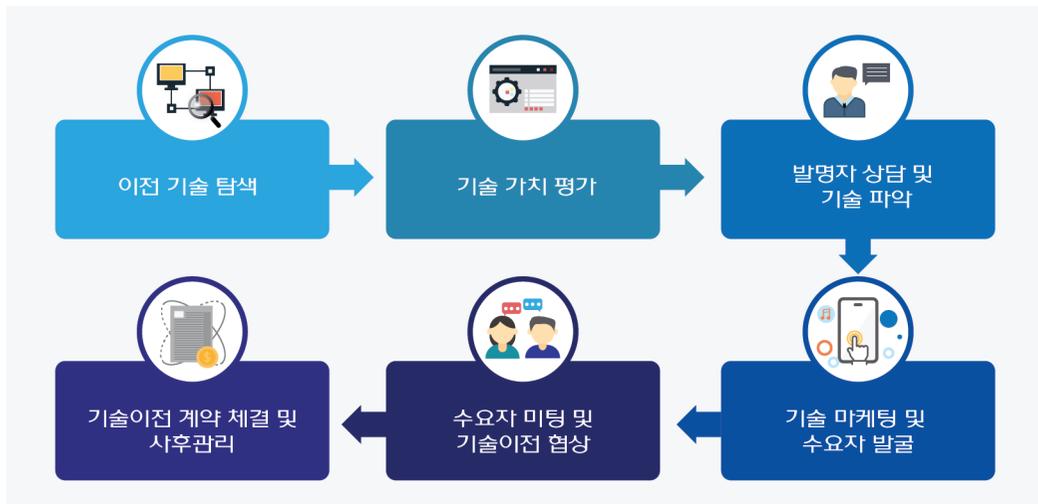


2. 기술이전과 발명자보상

가. 기술이전의 정의 및 진행 과정

- 국민대학교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짐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서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여·양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기술이전”이라고 함
- 기술이전의 형태는 권리양도(특허양도), 라이선싱, 노하우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참고	기술이전의 진행과정
----	------------



이전 기술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및 탐색 • 특허 출원 및 등록 여부 파악, 포트폴리오 구축 탐색 • 연구과제 탐색 및 기술사업화 가능 기술 모색 및 특허 출원 안내
기술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3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에 의뢰 후 평가 • 해당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평가
발명자 상담 및 기술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자의 기술이전 의사 확인 • 기술거래 전문기관 및 시장전문가를 통한 기술 내용 파악
기술 마케팅 및 수요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소개자료(SMK) 작성 • 수요기업 및 대상기업에 SMK 발송 및 정보 안내 • 기술이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기술 홍보
수요자 미팅 및 기술이전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된 특허를 통한 수요기업과 기술이전 방식, 범위 및 조건 협상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의견 교환 • 필요한 경우 기술거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협상 진행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한 법률"에 의거 발명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 기술이전 업체와 주기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수요기술 파악 및 추가 기술이전 계약체결 유도
-------------------	--

1) 우수기술 발굴 & 상담 신청

담당	업무	연락처 (내선)	이메일
오세웅	기술이전 및 사업화	5417	osw8554@kookmin.ac.kr
김민서	특허분석 및 마케팅	5700	mskim5700@kookmin.ac.kr
임세화	발명인터뷰 및 특허출원	5415	lim4082@kookmin.ac.kr

- 산학협력팀 공용메일 : patent@kookmin.ac.kr

나. 기술이전 형태 및 이에 따른 차이점

기술이전 계약 형태	내용
특허 양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의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을 모두 기업 측에 넘기는 것 • 특허 양도 시 특허의 소유권이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으로 이전함 • 연구자의 기술이전 업적으로 반영됨 • 양도된 특허는 연구자의 연구업적 (특허 업적)에서 제외됨
실시권 설정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의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은 산학협력단에 두고, 기술에 대한 실시권(=사용권)을 기업에 허여하는 것 • 이 경우 기술이전 대상 특허는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후에도 연구자의 업적으로 활용 가능함 • 실시권 허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실시권 (독점권: 한 기업에만 독점적으로 허여함) - 통상실시권 (비독점: 여러 기업에 동시에 허여 가능)
노하우 이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로 권리화되지 않은 연구자의 노하우를 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별도의 특허 출원이 필요하지 않음.

다. 기술이전에 대한 발명자 보상

- 국민대학교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짐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기술이전의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술료”라고 함
- 산학협력단은 근거법령과 학내 규정·정책에 따라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1)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시 확인 사항

- 정부 연구개발과제 성과물 여부: 정부연구개발과제 성과물 기술이전 시 사전 규정된 비율로 발명자 보상

2) 국민대학교 발명자 보상 비율

- 임금기술료 기준 : 발명자(70%) / 학교(30%)

외부연구비 관리 매뉴얼

초 판 인 쇄	2018년 05월 14일
초 판 발 행	2018년 05월 14일
개 정 2 판	2021년 08월 20일
개 정 3 판	2022년 11월 01일
개 정 4 판	2024년 04월 30일
발 행 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획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전 화	02) 910-5695
팩 스	02) 910-4030

